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심사보고서

2022. 6. 21.

행정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6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6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6. 20.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조성익)

가. 제안이유

-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인권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 및 구성원의 명확화(안 제11조)
-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현재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조례에 명시하여,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#### ○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8조의2는 구청장이 조례·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인권영향평가 제외 대상의 내용을 신설함.
- 안 제11조제2항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.
- 그 밖에 개정 조문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존중의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, 내부 행정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8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6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조례·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의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전반적인 조문 정비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나. 인권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 및 구성원의 명확화(안 제11조제2항)
- 다.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 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자체 개선안 동의
- 라. 입법예고(2022. 5. 12. ~ 6. 2./ 21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영등포구민”을 “영등포구 구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헌법」”을 “「대한민국헌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행시”를 “시행 시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들을수”를 “들을 수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“구민의견”을 “구민 의견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로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로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인권영향평가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조례·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,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

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제6조 제1항”을 “제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6조 제4항”을 “제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권관련”을 “인권 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, “의원”을 “구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인권관련”을 “인권 관련”으로 한다.

제12조 단서 중 “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”을 “보궐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